

<p>· 產·學의 各 構成員 間의 衡平을 맞춰 15人 이내에서 20人 이내로 調整하는 것은 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다음은 서울特別市서울館設置·運營에關한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, 서울의 姐妹friendly都市 및 其他 主要都市에 서울館을 設置하여 海外 主要都市와 交流協力支援, 情報蒐集, 中小企業의 海外進出支援 및 서울市政弘報 등의 機能을 遂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當 委員會에서 審查한바, 地方自治法 第15條 및 서울Glass設置推進計劃 市長方針 第1473號(94.7.26)에 根據하여 서울의 姐妹friendly都市와 海外 主要都市에 서울Glass을 設置하여 國際協力activity 據點基地를 確保하고, 서울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한 것은 매우妥當한 案이라고 判斷되나, 條例의 體系 및 內容上 서울Glass이라는 名稱이 對象都市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되어 條例案에서 規定한 서울Glass만을 고집할 경우 條例制定의 實效性이 의문시되므로 用語의 正義를 新設하고, 其他 條例上 不合理한 用語 및 자구를 修正하여 原案에 대하여 修正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員 여러분, 当 委員會에서 執行部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토대로 關聯 法規와 條例를 면밀히 研究하고depth 있는 質疑와 答辯을 통하여 신중한 審查를 한 結果, 서울特別市Internationalization Promotion Cooperation Committee條例中改正條例案은 全般的으로 必要性和 合理性이 있다고 判斷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고, 서울特別市서울Glass設置·運營에關한條例案은 修正可決하였습니다.</p> <p>보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查報告書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長님,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, 아무쪼록 本議員이 一括 報告드린 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文化Education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</p>	<p>特別市Internationalization Promotion Cooperation Committee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서울Glass設置·運營에關한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hr/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명중 “국제화”를 “세계화”로 한다.</p> <p>제1조제 “국제화의”를 “세계화의”로, “국제화 추진협의회”를 “세계화추진협의회”로 한다.</p> <p>제2조제2호, 제5호 및 제6호중 “국제화”를 “세계화”로 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중 “15인이내의”를 “20인이내의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>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서울관(이하 “서울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</p>
---	---

<p>이라 한다)이 별도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.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를 각각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로 하고, 안 제3조제6호중 “기타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”를 “기타 시장이”로 한다.</p>	<p>②서울관 근무를 위하여 파견될 자의 파견 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복무규정의 예에 따른다.</p>
<p>서울특별시서울관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안</p>	<p>부 칙</p>
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서울관(이하 “서울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제 2 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서울관이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해외주요도시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.</p>	<p>11.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 (15時 55分)</p>
<p>제 3 조(기능) 서울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	<p>○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지원 2. 해외도시의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·제공 3.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서울특별시에 둔 중소기업체 등의 상품전시·홍보 등 해외 진출지원 	<p>(議事棒 3打) 都市整備委員會 金孝善議員님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金孝善議員 都市整備委員會 所屬 金孝善議員입니다.</p>
<p>제 4 조(대상도시) 서울관은 서울특별시의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本議員이 이번 우리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</p>
<p>제 5 조(설치·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서울관을 설치·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금번 市長이 提出한 서울特別市住居環境改善事業施行條例中改正條例案의 主要要旨는 95年1月에 都市 低所得市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이 改正되어 그 内容을 條例에 반영하면서, 그 동안 本 條例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난 現實과 不合理한 점을 補完하여 住居環境改善事業을 活性化하고자 하는 것으로, 改正하고자 하는 主要骨子는 첫째, 住居環境改善事業에 따라 建築物을 改良할 時 道路幅이 2m 미만인 경우 2m 이상을 確保도록 하여 步行者通行과 이삿짐 등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,</p>
<p>②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</p>	<p>둘째, 世帶 當 60㎡ 이하의 共同住宅을建設할 경우 日照 等 確保를 위한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하여 住居環境改善事業 趣旨에 맞게 小規模 筆地의 住宅改良이 活性化되도록 하면서,</p>
<p>제 6 조(근무자 파견) ①시장은 서울관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셋째, 建築物 延面積과 300㎡ 이상의 共同住宅을建設할 경우 서울市 駐車場設置基準인</p>